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9
----------	-----

제출년월일 : '97. 7. 3.  
제 출 자 : 이일희 의원의 6인

## 1. 제안이유

-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2. 주요골자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97. 7. 3.  
제 출 자 : 박정자 의원의 6인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가 구정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2. 주요골자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대상
  - 구청장
  - 기획실장
  - 재무국장
  - 도시정비국장
  - 보건소장
  - 부구청장
  - 총무국장
  - 시민생활국장
  - 건설국장
2. 출석일자 : '97. 7. 7.(월)

##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